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66
----------	-------

발의연월일 : 2023. 8. 30.

발 의 자 : 소병훈 · 박완주 · 안호영
허영 · 김교홍 · 윤미향
윤준병 · 인재근 · 김승원
이원택 · 어기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체적인 정의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원·놀이터·노인정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의 부재 또한 불량한 주거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 자체의 불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비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

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노후 ·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u>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시 · 도 조례로</u> <u>정하는 건축물</u>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